

日本で働こうとする外国人のみなさまへ

일본에서 일하고자 하시는 외국인 여러분께

韓国・
朝鮮語

적절한 고용관리 속에서 일합니다.

< 직업상담, 직장처 알선 등에 관해서는 가까운 공공직업안정소로 문의해 주십시오. >
< 職業相談、就職先のあっせん等については、最寄のハローワークに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。 >

후생노동성

■
Hello Work (공공직업안정소)

목차

머리말	1
1 일본에서 일할 수 있는 외국인 · 일할 수 없는 외국인	
● 아래의 재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은 일본에서 취업할 수 있습니다.	1
●자격외활동 허가를 받지 않으면 일본에서 취업할 수 없는 재류자격.	2
●불법취업이 되는 경우	3
●다른 재류자격에 속하는 일을 전적으로 할 경우에는 재류자격을 변경합니다.	3
●재류기한을 초과하여 일본에서 재류할 수 없습니다.	4
●「유학」에서 「기술」, 「인문지식·국제업무」 등의 취업가능한 재류자격으로의 변경 수속에 대해서는	4
2 일자리를 찾을 때에는	
●일본에서 일자리를 찾을 경우에는 헬로워크 (공공직업안정소) 를 이용합니다.	5
●공공직업안정소의 이용방법에 대하여	5
●구인표 보는 방법	7
●면접과 채용에 대하여	8
●허가나 신고 없이 직업소개사업이나 노동자 파견사업 등을 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. 일본에서 일자리를 찾을 때는 불법 브로커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.	8
●이력서 작성법에 관하여	10
●직무경력서 작성법에 관하여	11
3 알아 두어야 할 일본의 노동기준 관계법령 등	
●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노동기준법 등 관계법령이 적용됩니다. 동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업주에게 그 실시가 요구되고 있는 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. (발췌)	12
●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「외국인 노동자 상담코너」 (주요 도도부현 노동국 노동기준부 감독과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.) 또는 노동기준감독서에 상담해 주십시오.	14
4 퇴직을 할 때는	
●일하던 회사를 퇴직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 주십시오.	15
●일본 국내의 사업소에 고용된 분은 파트 타이머 등의 단시간 노동자 중의 일부를 제외하고 원칙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만 합니다.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실직 · 퇴직한 때에는 수급 수속을 즉시 해 주십시오.	15
●직업훈련에 대하여	17
5 기타 노동자를 위한 보험제도에 대하여	
6 외국인 고용 상황 신고 의무화에 대하여	
●고용대책법이 개정되어, 2007년 10월 1일부터 외국인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게 외국인 노동자 고용 관리 개선 및 재취업 지원 노력 의무가 부과되고, 동시에 외국인 고용 상황 신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.	20
부속 자료	
●외국인 노동자 고용 관리 개선 등에 관해 사업주가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지침 (발췌)	21
●외국인 노동자 고용 관리 개선 등에 관해 사업주가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지침	25
●노동조건 통지서	31
●법무성 입국관리국, 외국인 재류종합 인포메이션센터 상담원 배치소 연락처 일람표	34
●통역이 배치된 공공직업안정소 일람표	36